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29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7. 9. 27(수) 07: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29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7년 9월 27일(수) 07:30
- 장 소 : 달개비 (중구 정동)
- 재적이사 : 11명
- 출석이사 : 9명
- 출석감사 : 2명

○○○ 사무국장이 제29회 임시이사회 의 성원을 보고하다.

○○○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 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61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61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이 지난 5월 시행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 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1항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에서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시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정관 제20조의 3항은 서울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당연직 이사 명칭을 『시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시 평생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1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62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은 제162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이 직제 및 정원규정 제5조 제1항 [별표3 직급 및 직위표]를 현행『4~5급 차장, 5~6급 대리』에서 『4~5급 책임, 5~6급 선임』으로 개정하여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조직 확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제6조 [별표1 정원표]를 『2급 1명, 3~4급 2명, 5급 2명, 6급 3명, 총 8명』에서 『상근 임원 1명, 2급 1명, 3~4급 2명, 5급 4명, 6급 5명, 총 13명』으로 개정하여 향후 신규 채용 및 조직 확대에 사전 대응하고자한다고 말한다.

제8조(기구)제1항의 『총무부』에서 『경영지원부』로, 제2항 『총무부장』에서 『경영지원부장』으로 개정하여 부서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확정성을 마련하고자한다고 말한다. 제8조 제5항 [별표2 기구표]에서 『12명 비상근』에서 『11명 비상근』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0.5.6.일 정관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이사 11명으로 개정되었으나, 직제 및 정원규정에 미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 이사가 [별표3] 직위표와 관련하여 책임자라고 하면 몇 급인지 묻다.

○○○ 사무국장이 3~4급이 부장으로 중간관리자이며, 5~6급은 실무자라고 말한다.

○○○ 이사가 책임, 선임이라는 말을 쓰는 조직이 있는지 묻다.

○○○ 사무국장이 내부적으로는 직급이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직급이 잘 드러나지 않는 중위적 표현으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시 출연기관 중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 이사가 연구재단에서 일을 했을 때 이 용어를 주로 사용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행정조직에서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쓰는 것이 익숙한데. 최근에는 일반조직에서 많이 쓰고 있어 안건상정을 했다고 말한다.

○○○ 이사가 연구소 조직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조직에도 도입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내부에서 직급이 있으면서 외부에 직급이 들어나지 않아 다 높은 직급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직위와 관련하여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말하고, 정원표 개정에 대해서 설명하다. 정원을 확대해 놓고 충원을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시 결원율이 높아 평가가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장학사업 발전 연구를 통해 장학사업 개편 및 신규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 4명을 확대하고, 경영평가 및 대외활동 등을 위해 상근 임원 1명을 채용하여 재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안건에 상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상근임원을 포함하여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예산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일단은 정원표를 개정해 놓고 예산과 및 공기업담당관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정원표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이사가 상근임원을 두자고 했는데 [별표2 기구표]에는 비상근이라고 되어 있다.

○○○ 사무국장이 이사장이 상임이사가 될 수도 있고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개정하기가 어려운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사장이 이사장을 상근임원으로 하게 되면 정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구표 개정에 대해서 안건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이사가 조례에서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지 묻고, 이사장을 상근으로 하면 조례개정을 해야 하고, 상근 이사를 두면 개정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출연기관들은 어떤지 묻다.

○○○ 사무국장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등은 이사장이 상근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사장은 비상임이며, 원장이 상근이사(대표)라고 말한다

○○○ 이사가 기구표에 있는 “비상근”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이사장도 상근이사체제가 되려면 ‘비상근’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이에 ○○○ 이사가 동의하다

○○○ 이사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시 예산과 및 공기업담당관에서는 5명의 증원은 과하다는 입장으로 2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와 있다고 말한다. 정원 8명을 10명으로 하고 현원이 7명 이므로 3명 정도 증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장학재단의 발전 가능성이나 업무 확장 가능성을 볼 때, 정원은 확대해 두되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 되면 더 뽑을 수 있으나 예산과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정원이 잡혀 있어도 선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출연, 출자기관의 예산이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 서울장학재단의 2018년도 예산이 약 18% 증액되었으며,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시의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재단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사무국장이 내년부터 장학생 선발 및 관리부분이 강화되고 본격 사업을 위한 작업을 위해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이사가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다. 다만, 직위표와 관련하여 행정조직에서 책임, 선임을 사용하게 되면 연구소 같은 느낌으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 효율성 및 신속성이 저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이 정원은 상근 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예산 반영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다. 직급 및 직위표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좀 더 검토 해보겠다고 말한다.

○○○ 감사가 향후 감사를 해야 할 입장으로서 제5조 제1항의 [별표 3 직급 및 직위표]는 1,2급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 제2항에서는 사무국장을 2급으로 보하며, 제3항에서는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문간의 충돌이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다. 제8조 제2항에 사무국장은 2급으로 보한다를 1~2급으로 보한다로, 제3항에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를 4~5급으로 보한다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다. 정원증원과 관련해서는 산술적으로 5명이 많다고 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현 정원에 비해 60%증원이므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예산과에서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나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다.

이사가장이 5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평생교육국에서 검토하여 시 공기업과 및 예산과에 제출했다고 말하다. 다만, 예산과 및 공기업과에서 정원에 대한 과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자료를 준비해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 이사가 평생교육국에서는 정원 증원에 대해 시장단까지 보고된 상황이고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구두로 시장님께 보고 후 시장님 지시가 있었으며 필요하다면 내부방침을 평생교육국에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이사가장이 관련 자료를 통해 최선의 노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제5조(직원)제1항 [별표3 직급 및 직위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6조(정원)[별표1 정원표]의 정원을 『8명』에서 『13명』으로 상근임원 1명을 포함해 5명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8조(기구)제1항 『재단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에는 총무부와 사업운영부를 둔다.』에서 『재단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에는 경영지원부와 사업운영부를 둔다.』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항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2급으로 보하며, 총무부와 사업운영부장은 3~4급으로 보한다.』에서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1~2급으로 보하며, 경영지원부장과 사업운영부장은 3~4급으로 보한다.』로 수정의결하고, 제3항 『각 본부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을 두며, 팀장은 5급으로 보한다.』에서 『각 본부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팀을 두며, 팀장은 4~5급으로 보한다.』로 수정의결하고, 제5항[별표2 기구표]에서 비상근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다고 말하며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2호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63호 장학사업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건(안건 삭제)

제163호 2017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건(제164호에서 제163호로 변경)

이사는 제163호 장학사업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장학금 사각지대 가정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제3조(지원대상)제1항 제1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으로 중위소득 80%이내 가정의 학생』에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으로 중위소득 80%이내 가정의 학생 및 가정의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소득실태조사 결과는 전년도 서류 등에 전제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SOS적인 상황이나 갑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아이에 대해 요건이 안 된 경우 재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탄력적으로 80%이내 가정 학생 및 가정의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학비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장학사업운영규정 제3조(지원대상) 제1항의 호가 몇 개 있는지 물으며 이 내용은 별도의 기타 조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부장이 제3조는 제1항은 5호까지 있으며 사업별로 제1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으로 중위소득 80%이내 가정의 학생으로 고등학교분야 장학사업을 말하며, 제2호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3분위 이내의 저소득 대학생으로 대학분야 장학사업을 말하며, 제3호는 공익적 가치를 통해 사회기여 및 봉사활동에 참여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공익인재 장학사업을 말하며, 제4호는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 하나고분야 및 서울평화희망 장학사업을 말하며, 제5호는 기타 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승인한 장학사업의 대상자로 민간장학사업을 통괄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이 사업이 고등학교분야 사업에 한정되어 제1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건 제안했다고 말한다.

○○○ 이사가 제1호의 내용과 1호에 추가하려는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 이사가 80%이내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운 학생을 포함시켜 지원하자는 뜻인지 묻는다.

이사장이 그렇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형식이나 담임선생님 등이 아이들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단 측의 승인을 받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다. 대학생의 경우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위기 상황 파악이 더 쉽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호로 따로 규정하지 않고 1호에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가하여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5호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며, 만약 제1호에 내용을 추가한다면 대등의 조건이 아닌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부장이 제163호 장학사업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안건 통과 시 당초 승인 된 2017년 사업계획의 사업부분의 대상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164호 2017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건을 준비했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에는 긴급지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긴급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 이사가 규정을 개정하지 말고 사업계획 변경 안건에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고 말한다.

○○○ 이사가 제5호 규정과 개정(안) 중 어떤 것이 포괄적인지 물으며, 규정을 추가하지 말고 5호를 통해 폭넓게 해석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되는 것은 어떠한지 묻다.

이사장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사업규정이 개정되면 항상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말하고, 다만 이 사항은 제5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바, 이 안건은 의결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64호 2017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건으로 제5호에 근거하여 긴급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사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어떤지 의견을 묻다. 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제163호 장학사업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164호 2017년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7년 9월 27일